

#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여
-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존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, 서울시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.
-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먼저 ‘문화재지킴이’를 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.
  
- 다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 향유를 위해 문화재 지킴이를 포함한 활동가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.
  
-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·시행, 자치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홍보·교육·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  
- 감사합니다.